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등 제도개선〉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36호)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18호)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29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8
1.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8
2. 규제심사 대상에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포함	14
3. 신산업분야 전략적 규제정비 등 규제합리화위원회 기능 강화	24
4. 사회적 갈등 예상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28
5. 국제규제협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3
6.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36
7.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 강화	38

I. 제안경위

1. 박상혁의원안

가.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0. 1.

다. 회 부 일 : 2025. 10. 2.

2. 정태호의원안

가.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1. 5.

다. 회 부 일 : 2025. 11. 6.

3. 유동수의원안

가. 제 안 자 : 유동수의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1. 19.

다. 회 부 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박상혁의원안

가. 제안이유

규제가 도입된 이후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규제정보를 통합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며, 규제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6호, 제18조

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기존규제가 당초 의도한 정책 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도입(안 제7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1조, 제10조,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 입증책임 부여(안 제17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 결과 필요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수집·활용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5) 규제 개선 추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안 제37조제1항)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6) 국제규제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 규제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정태호의원안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신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 규제 체계가 신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규제 신설 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부재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규제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강화,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함(안 제7조의2 신설 등).
- 2)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의 개선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3)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를 위해 위원회가 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5

신설 등).

- 4)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 5) 규제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 신설).

3. 유동수의원안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이게 되어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34조제3항, 제37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개정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기존규제의 심사·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심사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현 행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 <u>6. “사후규제영향평가”</u> <u>란 기존규제의 정책</u> <u>목적 달성 여부 및 환</u> <u>경 변화에 따른 적정</u> <u>성을 객관적이고 과학</u> <u>적인 방법으로 평가하</u> <u>고, 개선 방안을 제시</u> <u>하는 것을 말한다.</u>	
<u><신 설></u>	<u>제18조의2(사후규제영향</u> <u>평가) ① 위원회가 제1</u> <u>8조에 따른 기존규제의</u> <u>심사 또는 그 밖에 기</u> <u>존규제의 정비를 위하</u> <u>여 필요하다고 인정하</u>	<u>제18조의2(사후규제영향</u> <u>평가) ① 위원회는 규</u> <u>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u> <u>실제 효과를 점검하고</u> <u>개선 필요성을 평가하기</u> <u>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u>

현행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를 선정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전문성 또는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규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제 2.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② 제1항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

현행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u>전문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후규제영향평가서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③ 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④ 제3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u>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u><신설></u>	제24조(기능) ① ----- ----- ----- 3의2. 사후규제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24조(기능) ① ----- ----- ----- 3의2.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 선정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현행법 제7조·제10조¹⁾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및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시에도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기존규제 정비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34조²⁾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개선 점검·평가, 제19조³⁾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의 기존규제 자체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규제영향분석과 같은 구체적인 규제정비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이하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2)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제도·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일부 규제를 선정해 사후규제영향평가⁴⁾를 시범실시⁵⁾하고 있음.

□ 그러나,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평가 결과의 실효성 확보 수단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규제 정비 등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목적달성도 분석 등을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관련 규제를 정비하게 하려는 것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평가 결과를 규제 정비로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 4) 규제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목적달성도”와 “비례적 타당성”을 분석
 - (목적달성도) 규제준수 현황, 규제의 기여도,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의 검토 등을 통해 판단
 - (비례적 타당성) 규제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 규제의 파급효과, 이해관계자 및 규제집행기관 의견수렴 결과 등 종합 검토
 5) 사후규제영향평가 시범사업 예시

규제 내용	검토의견 및 정비 결과
경비업 허가·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에 따른 기준 경비인력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함(경비업 허가 신청)	해당 기준들은 대부분 2013년 개정된 기준으로, 최근 온라인 교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재검토 필요 → 경비업 허가 시 교육장 기준 폐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필수시설(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돌봄센터)이 포함되어야 함(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필수시설 중 작은도서관은 이용률이 저조하여 적자 운영 또는 방치되는 문제 발생, 권장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등 제안 → 반경 300m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 등은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예외 인정

□ 다만, 두 개정안은 ‘평가대상’, ‘위원회 재심사’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평가대상 선정과 관련해 행정기관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이의 제기절차를 두는 것이 행정기관의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정태호의원안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제도 안착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

구 분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평가목적	규제의 정책목적 달성 여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을 평가
평가대상	기존규제 심사·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규제	기존규제 중 ① 규제 목적과 수단 적합성 검토 필요 규제 ② 지속적으로 규제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규제 ③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평가 필요성을 인정한 규제
평가대상 선정	규제합리화위원회	
평가 수행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문연구기관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 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규제심사위 심의(전문연구기관의 결과는 바로 규제합리화위에 제출) → 규제합리화위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규제정비 권고	
위원회 재심사	-	위원회 권고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 요청(제15조 ⁶⁾ 준용)
권고사항 처리결과 제출	-	중앙행정기관장이 권고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제14조 ⁷⁾ 준용)

6)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2. 규제심사 대상에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포함

☐ 개정안은 ① 중앙행정기관장이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안 제10조 등), ② 목적 규정에 국민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조)하는 한편, ③ 고시 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는 행정예고⁸⁾ 시에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	제1조(목적) ----- ----- 규정하고 행정규제를 합 리화하여 ----- ----- ----- -----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 을 확보함으로써 ----- -----	제1조(목적) ----- ----- ----- ----- ----- -----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8)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 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규제영향분석 대상에는 법률·대통령령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고시 등도 포함되는데, '고시' 등의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아닌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함.

현행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 ----.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 제7조의2(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제7조의2(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현행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u>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u> <u>3.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u> <u>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u> <u>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u> <u>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기술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u> <u>7. 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u> <u>②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u>	<u>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u> <u>3.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u> <u>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u> <u>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u> <u>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기술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u> <u>7.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및 미설정 사유</u> <u>8. 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u> <u>②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u>

현행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본다.	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본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 --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제10조(심사 요청) ① --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② ----- ----- ----- ----- -----	② ----- ----- ----- ----- -----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1.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 ----- 2. 제7조제3항(제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 ----- 2. 제7조제3항(제7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	3. 제9조(제7조의2제2	3. 제9조(제7조의2제3항

현행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 제1항 전단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 제1항 전단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 -----.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개선 권고) ① ----- 제13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강화 또는 폐지·완화-----.	제14조(개선 권고) ① ----- 제13조(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강화 또는 폐지·완화-----.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② -----	② -----

현행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2. (생략) <신설>	-----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 -----. ----- -----. 제24조(기능)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 -----. ----- 제24조(기능)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 분석을 포함한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⁹⁾, 기존규제를 ‘폐지·완화’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9)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법 제19조¹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기존규제를 자체적으로 정비(폐지 또는 개선)¹¹⁾할 수 있는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없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체 정비한 후 그 결과를 규제합리화 위원회에 제출하면 됨.

□ 현행법의 제정 목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 억제”이며¹²⁾, 대부분의 규제정책은 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과도한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자칫 생명·안전 관련 보호 미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 신설·강화와 동일하게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게 함으로써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완화를 방지하고, 그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국민 삶에 미치는 부작용 등 파급효과를 비교·검토하도록 하여, 규제 정비의 합리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10)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12)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만, 현행법 제19조¹³⁾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은 기존규제를 자체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정비 대상과 개정안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생명·안전 규제 중 규제심사 대상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박상혁의원안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로만 그 대상을 규정하여 생명·안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정태호의원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제심사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는 있으나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의 대략적인 사항이 법률에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

현행법 제7조	개정안 제7조의2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신설·강화 규제	(대상추가) 폐지·완화 규제 중 생명·안전 관련 규제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13)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한편, 개정안 제7조의2와 현행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기준을 비교해 보면,

박상혁의원안은 ‘규제 존속기한·재검토키한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생명·안전 관련 규제 완화 시에도 일정 시점 경과 후 그 완화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규제영향분석 기준에 ‘규제 존속기한·재검토키한 설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개정안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기준>

신설·강화 규제 분석기준 (현행법 제7조제1항)	폐지·완화 규제 분석기준(개정안 제7조의2)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신설·강화의 필요성	폐지·완화의 필요성	
목적의 실현 가능성	폐지·완화의 적정성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등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규제 집단과 국민이 부담할 비용·편익 분석	영향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할 비용·편익 분석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기술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기술규정: 인체의 건강·안전 등을 위해 제품, 서비스, 공정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경쟁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규제 존속기한·재검토키한 설정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	<u>규제 존속기한·재검토키한 설정근거 및 미설정 사유</u>
-	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	
행정기구·인력 예산소요 등	-	

만약, 생명·안전 관련 규제 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기준에 ‘규제 존속기한·재검토키한 설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경우라면, 현행법 제8조 및 제8조의2¹⁴⁾는 규제 신설·강화만을 전제로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방향에 맞추어 규제 완화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 14)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키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신산업분야 전략적 규제정비 등 규제합리화위원회 기능 강화

- 개정안은 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 및 대상을 선정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②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기존규제 심사대상에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규제’와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정비한 규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현행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신설>	제17조의3(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①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 분야·대상 선정, 소명의 기한	제19조의5(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① (박상혁의원안과 같음) ② (박상혁의원안과 같음) ③ (박상혁의원안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 분야·대상 선정, 소명의 기한 및 절차

현행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18조(기준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준규제의 심사)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의3에 따른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준규제의 심사)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박상혁의원안과 같음) 2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라 정비한 기준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현행법 제19조의4, 제20조 및 제21조¹⁵⁾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가 3

- 15)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준규제를 선정하여 기준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준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준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년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 계획을 종합해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공표함.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은 이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맞추어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하지만,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 기존규제 정비 결과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없음.

□ 또한, 현행법 제17조¹⁶⁾에 따르면, 누구든지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해당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은 없음.

□ 개정안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정비 분야 및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하고, 관련 기존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며,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정비한 기존규제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16)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면이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 제18조제1항제2호의2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라 정비한 기존규제’에 대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미 ‘정비한’ 기존규제를 다시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국민 혼란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참고로,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등에 대해 현행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이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¹⁷⁾

17)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4. 사회적 갈등 예상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 개정안은 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한시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②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갈등 요소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4조제3항 등).

현행	유동수의원안
제9조(의견 수렴)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9조(의견 수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하 “공론화”라 한다)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의결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에 권고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심사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행	유동수의원안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 의견 요지 <u><신설></u>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제도·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1.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1항에----- ----- 4.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권고안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의뢰하거나, 사회적 갈등 요소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고 그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며,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¹⁸⁾

18)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정책 형성 초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개선 점검·평가와 관련해 전문기관에 연구나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⁹⁾, 사회적 갈등요소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한시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중 사회적 갈등 예상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 개선 점검·평가 시에도 사회적 갈등요소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의사를 규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중 ‘사회적 갈등 예상 규제’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갈등 예상 규제’의 의미가 모호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갈등 예상 규제’는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법률 개정 사안²⁰⁾에 해당할

19)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제도·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가능성이 높아 정부제출 법률안이 공론화의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21대국회 처리의안 통계²¹⁾에 따르면 정부제출 법률안은 전체 처리 법률안의 3% 수준이고, 처리 의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은 동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²²⁾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에도 그 입법 취지 달성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무조정실은 개정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공론화’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형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공론화의 법적 정의와 수행 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행정규제기본법」에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공론화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다만, 중앙행정기관장이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 시에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요소에 관해 국민 의

21) <제21대국회 처리의안 통계(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원발의	정부제출	합 계
25,027건(96.8%)	831건(3.2%)	25,858건(100%)

22)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동 위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각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를 두도록 한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²³⁾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시민참여기본법안」²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23)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530호(2025. 4. 1. 발의)

24)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823호(2025 .12. 31. 발의)

5. 국제규제협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개정안은 정부 또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국제규제협력 증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박상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신설>	제38조(국제규제협력) ① 위원회는 국제규제협력(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 규제 관련 정보 공유, 정책 협의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제규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규제협력 관련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2. 해외 규제정책 등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과의 정보 교환 3. 규제정책 관련 공동 정책 조사·연구 및 인력교류 등 4. 그 밖에 국제규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2.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정보 교류 3.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공동 연구·조사 4. 그 밖에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국무조정실은 현행법 제36조(행정지원 등)²⁵⁾에 근거해 국제부담금²⁶⁾을 납부하고,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제규제협력 사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음.

□ 개정안은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국제규제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박상혁의원안 제38조제3항은 국제규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규제협력 업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²⁷⁾하려는 취지인지 또는 업무협력기관을 지원하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아니함.

만약, 이 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에게 부여된 행정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취지라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정부조직법」²⁸⁾에 따라 법률로 정해지며, 법률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위탁할 수 없으므로, 권한 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25) 「행정규제기본법」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6) OECD는 우수한 규제정책을 가진 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자발적 기여금을 요청했고, 정부는 2025년부터 2억원의 기여금을 OECD에 납부하고 있음.

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²⁹⁾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와의 협정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임.

2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하 생략)

6.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개정안은 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의 효율적 관리 및 심사·평가,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고, ② 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며, 그 제공받은 자료·정보는 목적 범위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보유·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박상혁의원안
<신설>	제36조의2(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평가,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현행법 제6조제1항³⁰⁾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 규제의 명칭, 내용 등을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³¹⁾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30)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3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있어, 현재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제 내용 등의 정보를 동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은 이와 같은 단순한 규제 정보 등록을 넘어,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규제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인데,

현행법 시행령 제32조는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만 규정할 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자료·정보 수집 및 보유·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 수집·보유·이용 근거를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각 기관의 규제 관련 정보를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통합 관리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인데,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또한, 각종 규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정보 수집·보유·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규범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7.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 강화

☐ 개정안은 공무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① 감사원 감사나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시에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②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결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관련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박상혁·정태호의원안	유동수의원안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u>능동적</u> 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① ----- ----- <u>적극적</u> ----- ----- ----- ----- ----- ----- ----- . 이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① ----- ----- ----- ----- -----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그 밖의 불리한----- -----.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이하 “적극행정”

이라 함)³²⁾를 장려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34조의3³³⁾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³⁴⁾은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그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³⁵⁾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³⁶⁾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³⁷⁾ 역시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설정하고, 공무원이

32)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함(「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1항).

33)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34)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 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 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3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장이나 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해 그 제시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한편, 「국가공무원법」³⁸⁾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³⁹⁾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그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①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면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각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의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2조제8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38)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39)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없는 경우나 감사원·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⁴⁰⁾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⁴¹⁾ 부과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공무원이 규제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한 결과 발생한 행위에 대해 그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을 규정할 뿐 규제합리화위원회 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요건에 해당함을 추정하거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동수의원안은 현행법상 ‘불리한 처분’에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문책 요구 등’이 해당함을 규정함으로써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정태호·박상혁의원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예와 같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0) 「공무원 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다.

4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하 생략)

의 행위를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서 징계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부담없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적극행정 운영규정」⁴²⁾은 공무원이 인·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박상혁·정태호의원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 곧바로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기본계획 수립, 규제심사 및 규제 개선권고, 조정권한 등 현행법⁴³⁾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규제합

4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①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③ 공무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2조제8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리화위원회 심의·의결'에도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면책요건 추정
의 조건을 보다 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면책요건 추정을 위한 조건 비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정태호·박상혁의원안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장이나 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 처리 방 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하여	-
그 제시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단, 적극행 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감사기구 장 의 의견이 반영된 경우 「감사원법」에 따른 면책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둘째,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2항·제4항과 제17조제2항·제3
항44)은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

43)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규제 신설·강화 관련 심
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각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
의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
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사원, 감사기구 또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요건 추정 효력을 배제하고 있는데 반해, 박상혁·정태호 의원안은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부적정한 면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적 이해관계 등이 있을 경우에는 면책요건 추정 효력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⁴⁵⁾

문 의 처

02)6788-5113

제17조(징계 등 면제)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5) 감사원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의결에 면책요건 추정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부적정한 면책사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 적극행정 면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면책 추정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